의안번호	2201931
의 뢰 인	조인철 의원
회 답 일	2024. 7. 23.
추계번호	24F2109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4년 연장

【비용추계서】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Ⅰ. 비용추계 결과

❑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함에 따라 취득세는 2025년 6,152억원, 2028년 1조 2,158억원 등 2025년에서 2028년까지 4년간 총 3조 5,716억원(연평균 8,929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○ 하이브리드 자동차: 2025~2028년간 총 1조 5,330억원(연평균 3,833억원) 감소

○ 전기·수소 자동차: 2025~2028년간 총 2조 385억원(연평균 5,096억원) 감소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취득세, 2025~2028년
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2028	누적	연평균
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4년 연장(안 제66조 제3항)	−2,558	−3,268	−4,174	−5,331	−15,330	−3,833
전기·수소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4년 연장(안 제66조 제4항)	−3,594	−4,451	−5,513	−6,828	−20,385	−5,096
계	−6,152	−7,719	−9,686	−12,158	−35,716	−8,929

Ⅱ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6조 제3항 (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감면)	○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4년 연장 – (현행) 2024년 12월 31일 → (개정안) 2028년 12월 31일	
2	안 제66조 제4항 (전기·수소차에 대한 감면)	○ 전기·수소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4년 연장 – (현행) 2024년 12월 31일 → (개정안) 2028년 12월 31일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66조 제3항 (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감면)	○	
2	안 제66조 제4항 (전기·수소차에 대한 감면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❑ 부칙에 따라 개정안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전제하며, 세수효과는 2025년부터 발생

❑ 국토교통부의 「자동차등록통계」 연료유형별 자동차 신규등록 건수를 참고하여, 향후 하이브리드 및 전기·수소자동차 취득대수를 전망하고,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

○ 유형별로 신규 자동차 등록 추이가 다르게 나타남에 따라 다음 가정에 따라 향후 자동차 취득대수를 전망

- (하이브리드 자동차) 2023년 신규등록 건수(39.2만대)를 기준으로, '21~'23년 연평균 증가율(27.7%)에 따라 향후 신규취득이 증가할 것으로 가정
- (전기·수소 자동차) 2023년 신규등록 건수(16.7만대)를 기준으로, '21~'23년 연평균 증가율(23.9%)에 따라 향후 신규취득이 증가할 것으로 가정

○ 감면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배출가스 허용기준 등 요건[1)]을 충족해야 하는데 전기·수소 자동차는 전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반면,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75.8%(2023년 기준,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추정)만 요건을 충족하며 향후에도 해당 비중이 유지될 것으로 가정

1)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

○ 일반적인 자동차 가격수준을 고려할 때,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감면액은 한도(하이브리드 40만원, 전기·수소 140만원)를 적용받을 것을 전제하여 세수효과를 추계

- 하이브리드 자동차 감면액 한도(40만원)를 역산할 경우, 차량가액은 571만원 수준
- 전기·수소자동차 감면액 한도(140만원)를 역산할 경우, 차량가액은 2,000만원 수준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(1) 제도 개요 및 조세지출 실적

❑ (제도개요)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액 한도는 다음과 같이 변화해 옴

○ 하이브리드 자동차: ('10년) 140만원 → ('20년) 90만원 → ('21년) 40만원

○ 전기·수소 자동차: ('12년) 140만원 → ('17~'18년) 200만원 → ('19년) 140만원

❑ (감면실적)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실적은 다음과 같음

○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한도액 축소에 따라 2021년 725억원으로 감소하였다가, 2022년에는 913억원으로 증가

○ 전기·수소 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2018년 567억원에서 2022년 2,502억원으로 증가

[표 2]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실적: 2018~2022년

(단위: 억원)

	2018	2019	2020	2021	2022
하이브리드 자동차	1,500	1,639	1,326	725	913
전기·수소 자동차	567	522	710	1,512	2,502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(2) 추계방법

❑ (자동차 유형별 취득대수 및 감면대상 전망)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료유형별 자동차 신규등록 건수를 바탕으로 2028년까지의 신규 취득대수 및 감면대상 수를 전망

○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2023년 신규등록 건수를 기준으로, 향후 '21~23년 연평균 증감률(27.7%)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

○ 신규로 취득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 75.8% 만 감면요건을 충족

[표 3] 하이브리드 자동차 신규등록 건수: 2019-2023년

(단위: 건, %)

	2019	2020	2021	2022	2023	'21-'23년 연평균 증가율
등록건수	104,301	173,580	240,341	274,856	392,075	27.7

자료: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

[표 4] 하이브리드 자동차 신규취득 대수 전망: 2024-2028년

(단위: 대)

	2024	2025	2026	2027	2028
하이브리드 자동차(A)	500,772	639,603	816,923	1,043,402	1,332,669
감면 대상 (A × 75.8%)	379,585	484,819	619,228	790,899	1,010,163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○ (전기차 · 수소 자동차) 전기·수소 자동차는 2023년 신규등록 건수를 기준으로, 향후 '21~'23년 연평균 증감률(23.9%)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, 100% 감면대상이 된다고 가정

[표 5] 전기·수소 자동차 신규등록 건수: 2019-2023년

(단위: 건, %)

	2019	2020	2021	2022	2023	'21-'23년 연평균 증가율
전기자동차	35,102	46,776	100,549	164,748	162,639	27.2
수소자동차	4,201	5,848	8,549	10,338	4,710	-25.8
계	39,303	52,624	109,098	175,086	167,349	23.9

자료: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

[표 6] 전기차·수소 자동차 신규취득 대수 전망: 2024-2028년

(단위: 대)

	2024	2025	2026	2027	2028
전기·수소 자동차(A)	207,265	256,702	317,931	393,764	487,684
감면 대상 (A × 100%)	207,265	256,702	317,931	393,764	487,684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❑ (세수효과) 앞서 전망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감면대상 전망치에 감면액 한도를 적용하여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추정

○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일반적인 가격을 고려 시, 모든 자동차 취득에 대해 한도액까지 감면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

- 하이브리드 자동차 감면액 한도(40만원)를 역산할 경우 차량가액은 571만원 수준
- 전기·수소전기자동차 감면액 한도(140만원)을 역산할 경우 차량가액 2,000만원 수준

[표 7] 차량유형별 세수효과 추정

(단위: 대, 억원)

		2025	2026	2027	2028
하이브리드 자동차 (제66조 제3항)	감면 대상(A)	639,603	816,923	1,043,402	1,332,669
	감면액 (A×40만원)	2,558	3,268	4,174	5,331
전기·수소전기차 (제66조 제4항)	감면 대상(B)	256,702	317,931	393,764	487,684
	감면액 (B×140만원)	3,594	4,451	5,513	6,828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(3) 추계결과

❑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함에 따라 취득세는 2025년 5,533억원, 2028년 1조 868억원 등 2025년에서 2028년까지 4년간 총 3조 2,006억원(연평균 8,001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○ 하이브리드 자동차: 2025~2028년간 총 1조 1,620억원(연평균 2,905억원) 감소

○ 전기·수소 자동차: 2025~2028년간 총 2조 385억원(연평균 5,096억원) 감소

[표 8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취득세, 2025~2028년
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2028	누적	연평균
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4년 연장(안 제66조 제3항)	−1,939	−2,477	−3,164	−4,041	−11,620	−2,905
전기·수소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4년 연장(안 제66조 제4항)	−3,594	−4,451	−5,513	−6,828	−20,385	−5,096
계	−5,533	−6,928	−8,676	−10,868	−32,006	−8,001

Ⅳ. 부대의견

❑ 없음

Ⅴ. 작성자

❑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이정훈	백경엽

❑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정훈	02−6788−4837	nororand@assembly.go.kr